일본 지방채인수 전담기관으로서의 공영기업금융공고

이 창 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Ⅰ. 머리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중 금년도 예산기준으로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145개 단체로 전체 자치단체의 58%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정이 열악한 상황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투자재원 조달에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부족한 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수요에 대응하고 자치단체의 보다 안정적이고 저리의 자금조달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지방채인수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지방채인수 전담기관화 하는 연구가 긍정적으로 진행중에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이미 1957년에 지방채인수 전담기구인 공영기업금융공고를 설립하여 자치단체에 대해 안정적이고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공영기업금융공고 제도의 검토는 우리나라 지방채인수 전담기구의 설립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공고의 설립목적 및 특징

가. 공고의 설립목적과 과정

일본의 공영기업금융공고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기업에 대해 저리이면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지방공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기할 목적으로 1957년 6월에 설립되었다.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방채인수 등을 행하는 전문금융기관을 설치하려는 구상은 1948년에 지방재정위원회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중앙금고」안이 처음 제창되었다. 그후 1954년에는 공모채의 소화문제에 중심을 둔 「지방채증권공고」 구상이 검토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956년에 이르러 지방제도조사회의 답신을 계기로 공고의 설립구상은 지방채전반을 취급하는 기관에서 「공영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이에 관계하는 지방채를 취급하는 기관」으로 논의가 전환되어 1957년3월 31일에 「공영기업금융공고법」을 가결하여 동년 6월 공고가 설립되게 되었다.

동법안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정부기관인 자금운용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금운용부는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일반채를 인수하고 공고는 공기업에 관한 공모채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하여 공고의 명칭도 「공영기업금융공고」로 하였다.

지방분권이 진전되는 가운데 지역경제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기반정비를 위하여 양질의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이런 상황속에서 공고는 재정투융자의 개혁 등 공적금융을 둘러싼 정세변화에도 적절히 적응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장기이면서 저리의 자금의 융통에 노력하면서 자치단체를 위한 공동자금조달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나. 공고자금의 특징

1) 대부자금의 특징

공고의 대부자금은 자금량의 풍부, 정부자금에 이어 두 번째의 저리자금, 그리고 대부기간이 매우 장기적이라는 점과 민간자금에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유리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풍부한 대부자금을 들 수 있다. 지방채계획에 있어서의 공고의 대부계획액은 중장기에 걸쳐 사회자본정비의 추진이라는 관점에서 1979년 이후 매년 1조엔 규모로 증가되고 있으나 1992년도부터 대폭적으로 증액되어 1993년부터는 거의 2조엔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1999년 현재 장기대부잔고는

20조엔을 넘어서고 있다. 이 대부잔고는 일본의 정부관계금융기관 중에서는 주택금융공고에 이어 두 번째의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둘째, 저리의 공고자금을 들 수 있다. 공고의 대부이율은 설립부터 1965년까지는 모든 대부대상사업에 대해 조달비용에 기초하여 기준이율을 적용하였으나 공영기업의 추진과 그 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1966년에 기준이율보다 저리인 특별이율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후 매년 대상사업이 확대되고 대부조건의 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1990년에는 특별이율보다 한층 저리인 임시특별이율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 결과 일반대부 전체에 차지하는 특별이율에 의한 저리의 대부액 비율은 98.5%에 달하고 있고 기준이율의 대부는 불과 1.5%에 불과하다.

셋째, 대부기간의 장기성을 들 수 있다. 공고자금의 대부기간은 정부자금 다음으로 길고 민간자금에 비해 매우 장기의 고정금리로 되어 있다. 즉 공고자금의 상환기간은 교통사업(차량구입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10년이상으로 되어 있고 최장기인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도시고속철도사업에 대해서는 28년으로 공고대부의 평균대부기간은 25년(5년거치)이다. 이것은 공영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민간자금의 상환기간이 통상10년을 최장기간인 것에 비해 가장 큰 특징적인 점이라 할 수 있다.

2) 대부원자의 특징

공고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대부를 행하기 위한 필요자금은 다른 정부관계금융기관과 같이 자금운용부등에서 차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영기업채권의 발행에 의해 민간(공모채) 및 지방공무원공제조합연합회(연고채)로 조달하고 있다. 공모채에는 국내의 은행, 증권회사등에 의해 구성되는 신디게이트단이 일괄하여 매수하는 국내채와 그리고 외국시장에서 발행되는 외화채가 있다.

또한 연고채는 1989년까지 지방공무원관련공제조합등에 의해 직접 인수를 받았으나 1990년부터는 전부 지방공무원공제조합연합회가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연고채 인수액의 약 20%에 상당하는 부분은 저리의 특별채로 발행되고 있다.

3) 업무체계의 특징

첫째, 간편하고 신속한 대출을 들 수 있다. 공고는 설립당초부터 절차를 가능한 간단히 하여 신속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고대부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대부는 자치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기채허가를 얻은 사업을 대부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고에서는 대부대상사업의 채산성 혹은 차입선의 상환능력 등에 관한 심사는 기채허가의 단계에서 이미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중복하여 행하지 않고 지방채의 허가를 받았는지의 여부,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의 여부, 자치단체가 차입을 희망하는 시점에서 자금수요가 발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의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고 있으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부를 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도로공사,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대부의 경우는 기채허가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고의 책임성과 관련하여 개발계획, 상환전망 등의 심사를 행하여 대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가능한 차입을 행하는 공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 및 대부절차 등에 있어서 간소화 및 합리화를 기하고 있다.

둘째, 간소한 조직 및 도도부현의 협력을 들 수 있다. 공고의 구성정원은 인건비에 의한 자금조달 코스트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 즉 사무소는 1개소를 두고 지점은 설치하지 않고 있어 자금규모에 비해 비교적 간소하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도도부현, 시정촌등 3,000이상의 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의 대부, 관리 및 회수 사무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행하기 위하여 원리금의 회수사무의 일부를 도시은행 및 지방은행에 위탁함과 동시에 도부현에 대해서는 시정촌에 관한 대부사무의 지도 및 대부금의 비도상황 등의 조사사무 일부를 의뢰하는 등 협력에 의해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원활하고도 적정하게 집행하는 업무체계를 이루고 있다.

3. 공고의 역할 및 업무

가. 대부대상사업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장기대부대상사업은 <표 1>과 같이 설립당초의 9개사업에서 점차 확대되어 1978년도부터는 임시지방도로사업, 임시하천정비사업 및 임시고등학교정비사업의 보통회계에 속하는 3개 사업이 추가되어 합계 20개 사

<표 1> 공고의 대부대상사업의 추이

	사업명	개시년도
1	수도사업	1957년
2	공업용수사업	1957년(수도사업에서 분리독립)
3	교통사업	1957년(1970년도에 고속철도가 추가)
4	전기사업	1957년
5	가스사업	1957년
6	항만정비사업	1957년(1963년 저수장이 추가)
7	병원사업	1957년
8	시장사업	1957년
9	도축사업	1957년
10	관광시설사업	1957년
11	유료도로사업	1967년(관광시설사업에서 분리독립)
12	주차장사업	1967년
13	지역개발을 위한 토지조성사업중 임해공업요지 기타 임해부의 토지조성사업, 기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서 행해지는 택지조성사업	1959년(수개의 관련사업이 추가)
14	공공하수도사업 및 유역하수도사업	1960년(1975년 유역하수도사업이 추가)
15	시가지재개발사업	1971년
16	공영주택사업	1977년
17	산업폐기물처리사업	1977년
18	임시지방도로정비사업	1978년
19	임시하천정비사업	1978년
20	임시고등학교정비사업	1978년

업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각 자치단체가 행한 공고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해 고요금대책을 위한 상수도사업등에 보다 저리이면서 장기자금에로 차환이 1967년도부터 인정되고 있다.

게다가 1971년부터는 새로이 지방도로공사가 행하는 유료도로사업 및 토지개발공사가 행하는 항만정비사업, 공업용지 및 유통업무단지조성사업등에 대해서도 대부를 행하고 있다.

또한 매년도 실시하고 있는 대부외에 적자 공기업의 재정재건을 위한 임시적인 조치로서 1966년과 1967년에 적자지방공영기업의 이른바 재정재건채에 대한 대부를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1973년에 공영교통재건채, 1974년에 공립

병원특례채에 대한 대부를 실시하게 되었다.

나. 업무체계

공고는 주로 자치단체에 자금의 대부를 행하기 위하여 공영기업채권의 발행을 주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그 업무체계는 〔그림 1〕과 같다.

자금은 정부출자금 및 국고보조금, 공영기업채권, 공영경기납부금 등으로 조성하여 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지방도로공사와 토지개발공사를 대부선으로 하여 20개의 대부대상사업에 대해 자금의 대부를 행하고 있다.

다. 대부종류

1) 일반대부

공고가 행하는 대부종류는 크게 일반대부, 공사대부, 수탁대부 3가지로 구분

〔그림 1〕 공고업무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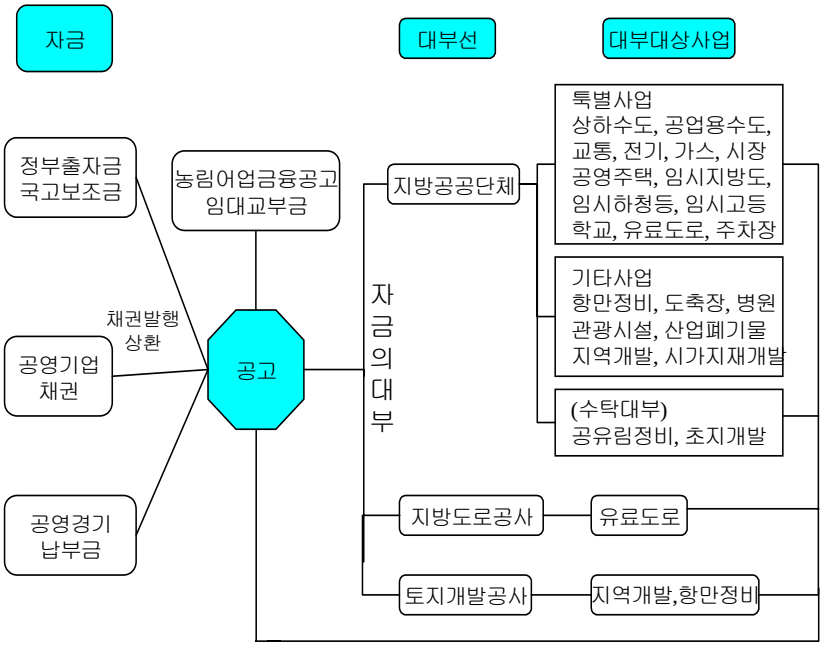

할 수 있다.

일반대부는 대상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이다. 공고가 실제로 대부를 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97%에 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경도 특별구, 지방자치단체의 일부사무조합 및 지방개발사업단에 대해서도 대부를 행하고 있다. 일반대부는 장기대부, 기채전대, 단기대부의 3종류로 구분되고 있다.

2) 공사대부

1972년에 공사대부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지방공사중 지방도로공사 및 토지개발공사에 대해 융자를 행하고 있다.

이는 1960년대에 있어서 도시화의 진전,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생활환경기반정비등 수요의 급격한 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각종 사업을 행하게 되는 것을 배경으로 하여 제도화되었다.

3) 수탁대부

수탁대부는 농림어업금융공고에서 위탁을 받아 공유림정비사업과 초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대부를 행하고 있다. 공유림정비사업은 1960년도부터 시구정촌 및 시정촌이 가입하는 일부사무조합이 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대부가 행해지고 있고 1972년부터 도도부현이 행하는 사업도 대부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1991년부터 分收育林取得資金이 대부대상으로 첨가되었다.

초지개발사업은 1967년부터 시구정촌 및 시정촌이 가입하고 있는 일부사무조합이 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대부가 행해지고 있다. 1992년부터는 비보조사업도 대부대상이 되고 있으며 1996년부터 도도부현이 대부대상으로 추가되었다.

라. 자금조달 및 대부

1) 원자 및 자금조달

자금조달의 대종을 차지하고 있는 공영기업채권의 발행액은 대부액의 증대에 수반하여 1957년도의 70억엔에서 1999년 2조 4,742억엔으로 약 353배로 늘어났다. 발행잔고는 1999년말 현재 21조 6,731억엔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증가해 온 공영기업채권의 발행형태별의 경과를 보면, 우선 설립초

년도는 시장공모채 40억엔, 연고채 30억엔 합계 70억엔을 정부보증을 얻어 발행했는데, 1958년부터 1961년도까지는 시장공모채만을 발행했다. 이어 1962년에 이르러 지방공무원공제조합을 인수선으로 하는 정부보증이 없는 연고채(공제인수연고채)의 발행을 개시하고 1966년부터는 그 연고채의 20% 상당분에 대해 특별저리로 인수하게 되어 공제조합의 자금을 지방채자금으로 유효하게 활용하는 길이 열렸다.

그 후 1976년도에는 당해 년도에 한한 조치로서 금융기관인수연고채를 발행했다. 게다가 1983년부터는 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 및 자금코스트경감의 일환으로 새로이 외화채를 그리고 1984년부터는 지방공무원공제조합연합회인수에 의한 연고7년채를 발행하고 있다.

1999년도말 공영기업채권의 발행형태별 잔고내역은 시장공모채 15조 8,312억엔, 공제인수연고채 5조 701억엔, 외화채 7,718억엔으로 되어 있다. 또한 공고의 대부원자로서는 공영기업채권외에 정부출자금 및 공영경기납부금등이 있고 이중 정부출자금은 설립당초 5억엔이었는데, 1999년도말 누계로 166억엔이다.

공고는 시장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시장에서 평가를 얻으면서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함과 동시에 경영기반의 강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금조달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2) 대부액 및 대부이율

대부액은 1957년 71억엔에서 1999년 2조 1,377억엔으로 약 301배가 되고 1999년도말 현재 공사대부를 포함한 장기대부잔고는 22조 5,342억엔에 달하고 있다.

대부사업별로 보면 하수도사업이 8조 3,261억엔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수도사업 5조 163억엔, 임시지방도로사업 4조 8,957억엔, 교통사업 1조 3,461억엔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대부이율은 원칙적으로 공고의 주요자금원인 공영기업채권의 발행코스트에 따라 그 수준으로 결정되는 기준이율과 이보다도 저리인 특별이율이 있다. 기준이율은 공영기업채의 조건개정에 수반하여 변동하고 있고 1999년도에 있어서는 5회 개정이 행해졌다.

그리고 기준이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는 특별이율에 의한 대부대상사업(특별사업)은 1966년도의 상수도사업에서 점차 확대되어 1997년부터 유료도로사업이 첨가되어 합계 13개사업이

있다.

특별이율과 기준이율과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재원은 1966년도에는 정부출자금 2억엔(1966년도에 한해) 및 지방공무원공제조합에서 인수하는 저리의 특별채의 발행에 의해 조치되고 1967년도부터는 정부출자금에 대신하여 국고보급금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게다가 1970년에는 공영경기납부금제도가 창설되어 납부금의 운용수익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어서 1976년도부터는 당해연도의 납부금 자체를 이자보전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사회자본의 정비의 욕구에 대응함과 동시에 자치단체에게 유리한 자금융통을 실현해 가기 위한 대부조건등의 개선을 기하고 있다.

3)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설립이래 모든 대부대상사업이 원금균등상환이었는데, 1978년도부터 상수도사업, 1980년부터는 공업용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을 그리고 1981년부터는 유료도로사업을 각각 원금균등상환으로 변경하여 개선하고 있다. 게다가 1986년부터는 지역개발을 위해 행하는 임해토지조성사업 및 내륙공업용지조성사업을 만기일괄상환으로 개선했다. 또한 1993년부터는 지하철사업특례채 및 지역개발을 위해 행하는 임해토지조성사업 및 내륙공업용지조성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원금균등상환으로 개선했다.

상환기한은 설립당초 상수도 및 전기의 2개 사업이 15년 이내(거치 2년이내)로 최장이었는데, 그후 점차 개선되고 있고 현재 최장인 것은 상수도, 하수도 및 고속철도의 각 사업은 28년이내(거치 5년이내)로 되었다.

마. 조직구성

공고는 사무소를 동경도에 두고 1999년의 기구는 〔그림 2〕와 같이 총무부, 경리부, 융자부, 관리조사부 4부에 8과를 두고 있다. 임원은 총재 1인, 이사 3인, 감사 1인 등 5인과 직원8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고의 업무조직은 자금의 대부를 행하는 융자부, 대부채권의 관리 및 회수를 행하는 관리조사부, 채권의 발행 및 상환과 자금의 경리를 행하는 경리부 그리고 공고 전체의 기획조정을 행하는 총무부로 구분되어 있다. 각 담당부는 유

〔그림 2〕 공고의 조직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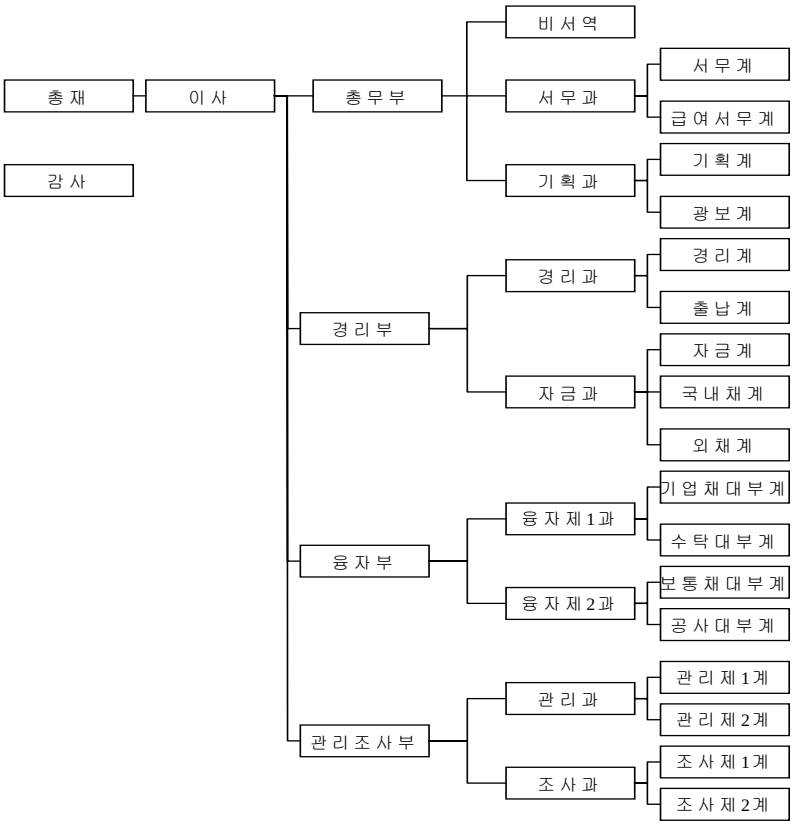

기적으로 연결되어 종합적으로 기능하면서 공고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다.

1999년도에 채권발행·관리업무체제의 충실강화를 위하여 자금과에 「외채계」를 새로이 설치하고 있다.

4. 공고의 1999년도 운영상황

가. 지방채계획의 개요

1999년도의 지방채계획은 지방재원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극히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하에서 건전성의 확보에 유의하면서 활력있는 지역사회구축을 목표로 소요의 지방채자금 확보를 기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책정되었다.

<표 2> 1999년도 지방채계획

항 목	평성11년도 지방채계획(개정후)				지방채계획등
	총 액	정 부	공 고	민간 등	(공고분)
1. 일반회계채					
1) 일반공공사업	35,360	25,928	-	9,432	-
2) 공영주택건설사업	4,092	2,482	701	909	701
3) 재해복구사업	1,947	1,947	-	-	-
4) 의무교육시설정비사업	3,185	2,147	-	1,038	-
5) 후생복지시설정비사업	2,457	2,457	-	-	-
⑴ 사회복지시설 등	2,093	2,093	-	-	-
⑵ 레크레이션・스포츠시설	364	364	-	-	-
6) 일반폐기물처리사업	6,138	6,105	-	33	-
7) 주택사업	64	64	-	-	-
8) 일반단독사업	62,907	7,739	5,020	50,148	5,020
⑴ 일반사업	9,331	3,448	-	5,883	-
⑵ 공원녹지사업	2,207	1,726	-	481	-
⑶ 고등학교정비사업	355	288	-	67	-
⑷ 지역총합정비사업	21,595	-	-	21,595	-
① 일반분	715	-	-	715	-
② 특별분	20,880	-	-	20,880	-
⑸ 지역총합정비자금대부사업	960	-	-	960	-
⑹ 자연재해방지사업	811	120	-	691	-
⑺ 임시지방도정비사업	16,887	1,398	4,643	10,846	4,643
⑻ 임시하천등정비사업	1,605	232	277	1,096	277
⑼ 임시고등학교정비사업	1,156	527	100	529	100
⑽ 임시경제대책사업	8,000	-	-	8,000	-
9) 과속대책사업	4,505	4,405	-	100	-
10) 지역개선대책특정사업	100	100	-	-	-
11) 신산업도시등건설사업	373	239	-	134	-
12) 공공용지선행취득등사업	700	10	-	690	-
13) 조정	337	90	-	247	-
소 계	122,165	53,713	5,721	62,731	5,721

<표 2> 계속

항 목	평성11년도 지방채계획(개정후)				지방채계획등
	총 액	정 부	공 고	민간 등	(공고분)
2. 공영기업채					
1) 상수도사업	9,984	5,096	4,124	764	4,124
2) 공업용수도사업	492	182	288	22	288
3) 도시고속철도사업	3,466	1,246	1,105	1,115	1,105
(1) 일반분	3,128	1,076	937	1,115	937
(2) 특별분	338	170	168	-	168
4) 일반교통사업	309	141	60	108	60
5) 전기사업 · 가스사업	389	184	200	5	200
6) 간이수도사업	1,136	1,136	-	-	-
7) 항만정비사업	1,050	799	79	172	79
8) 병원사업	5,450	4,605	-	845	-
9) 시장사업	451	294	131	26	131
10) 도축장정비사업	32	32	-	-	-
11) 지역개발사업	5,160	-	109	5,051	109
12) 하수도사업	26,980	17,262	7,832	1,886	7,832
(1) 일반분	23,952	14,505	7,832	1,615	7,832
(2) 특별분	309	309	-	-	-
(3) 특례조치분	2,719	2,448	-	271	-
13) 유료도로사업 · 주차장정비사업	266	94	166	6	166
14) 관광기타사업	379	85	51	243	51
15) 공유정비업사업 · 초지개발사업	(174)	-	(174)	-	(174)
소 계	55,544	31,156	14,145	10,243	14,145
3. 공영기업차환채	600	-	600	-	600
4. 특별전대채	558	558	-	-	-
5. 감세보전채	3,486	1,973	-	1,513	-
6. 감수보전채	5,577	-	-	5,577	-
합 계	(174) 187,930	87,400	(174) 20,466	80,064	(174) 20,466
지방도로공사					200
토지개발공사					
소 계					200

<표 2> 계속

항 목	평성11년도 지방채계획(개정후)				지방채계획등
	총 액	정 부	공 고	민간 등	(공고분)
총 계	(174) 187,930	87,400	(174) 20,466	80,064	(174) 20,466
특별지방채					
1) 후생복지시설정비사업	2,457	2,457	-	-	-
(1) 사회복지시설 등	2,093	2,093	-	-	-
(2) 레크레이션・스포츠시설	364	364	-	-	-
2) 일반폐기물처리사업	6,138	6,105	-	33	-
3) 주택사업	64	64	-	-	-
4) 간이수도사업	1,136	1,136	-	-	-
5) 병원사업	5,450	4,605	-	845	-
6) 도축장정비사업	32	32	-	-	-
7) 관광기타사업	379	85	51	243	51
소 계	15,656	14,484	51	1,121	51

1999년도의 지방채계획은 <표 2>와 같이 18조 7,930억엔으로 내역은 일반회계채 12조 2,165억엔, 공기업채 5조 5,544억엔, 공기업차환채 600억엔등이다. 지방채계획에 있어서 공고자금액은 공기업채 및 공기업차환채에 대해 1조 4,745억엔, 일반회계채중 공영주택, 임시지방도로정비, 임시하천정비, 임시고등학교정비사업에 대해 5,721억엔으로 합계 2조 466억엔이 계상되었다.

나. 대부개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1999년도 대부액으로는 766억엔을 추가하여 2조 1,044억엔(1999년도 지방채계획액분 1조 3,019억엔, 1998년도 지방채계획액분 7,953억엔)으로 지방공사에 대한 대부액을 포함하여 합계 2조 1,244억엔이다.

1999년도 대부액은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2조 1,377억35백만엔이고 이중 일반대부분이 2조 1,174억 174백만엔, 공사대부액이 202억51백만엔이다. 또한 농림어업금융공고에서 위탁을 받아 행한 수탁대부액은 110억88백만엔이다.

대부액의 사업별내역은 하수도사업이 전체의 38%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임시지방도로정비사업 25.6%, 상수도사업 16.4%등이다.

<표 3> 1999년도 사업별 대부상황

구 분	대부계획액 (백만엔)	대부액(백만엔, %)			
		97년도・98년 도허가채결정분	99년도허가채 결정분	총 액	구성비
일반회계채					
공영주택사업	76,000.00	74,393.90	360.40	74,754.30	3.5
임시지방도정비사업	522,400.00	545,598.60	1,086.80	546,685.40	25.6
임시하천등정비사업	28,900.00	28,467.10		28,467.10	1.3
임시고등학교정비사업	9,800.00	9,221.00		9,221.00	0.4
소 계	637,100.00	657,680.60	1,447.20	659,127.80	30.8
공영기업채					
상수도사업	411,800.00	95,368.40	256,078.80	351,447.20	16.4
공업용수도사업	28,900.00	9,574.60	16,625.60	26,200.20	1.2
도시고속철도사업	111,400.00	15,057.00	94,754.00	109,811.00	5.1
일반교통사업	6,200.00	532.00	5,319.80	5,851.80	0.3
전기사업・가스사업	20,500.00	1,069.50	18,194.00	19,263.50	0.9
전기사업	9,600.00	137.50	9,248.00	9,385.50	0.4
가스사업	10,900.00	932.00	8,946.00	9,878.00	0.5
간이수도사업			444.60	444.60	0.0
항만정비;사업	8,200.00	5,373.00	6,235.00	11,608.00	0.1
병원사업			9,730.60	9,730.60	0.5
시장사업	14,200.00	16,296.00	1,305.00	17,601.00	0.8
지역개발사업	10,800.00	12,416.00	1,931.00	14,347.00	0.7
임해토지조성사업		6,281.00	715.00	6,996.00	0.3
내륙공업용지등조성사업		1,322.00	1,216.00	2,538.00	0.1
유통업무단지조성사업					
시가지재개발사업		286.00		286.00	0.0
토지구획정리사업		4,527.00		4,527.00	0.2
주택용지조성사업					
하수도사업	771,200.00	650,386.50	161,680.79	812,067.29	38.0
유료도로사업・주차장정비사업	19,100.00	14,963.40	2,966.40	17,929.80	0.8
유료도로사업	500.00				
주차장정비사업	18,600.00	14,963.40	2,966.40	17,929.80	0.8
관광기타사업	5,000.00	1,697.00	357.30	2,054.30	0.1
공유림정비사업・초지개발사업	(17,070)	(8,292.5)	(2,795.6)	(11,088.10)	(100.0)
공유림정비사업	(13,350)	(6,779.1)	(2,740.6)	(9,519.70)	(85.9)
초지개발사업	(3,720)	(1,513.4)	(55.0)	(1,568.40)	(14.1)

<표 3> 계속

구 분	대부계획액 (백만엔)	대부액(백만엔, %)			
		97년도・98년 도허가채결정분	99년도허가채 결정분	총 액	구성비
소 계	(17,070) 1,407,300.00	(8,292.5) 822,733.40	(2,795.6) 575,622.89	(11,088.10) 1,398,356.29	65.4
계	(17,070) 2,044,400.00	(8,292.5) 1,480,414.00	(2,795.6) 577,070.09	(11,088.10) 2,057,484.09	96.2
공영기업차환채	60,000.00		60,000.00	60,000.00	2.8
합 계	(17,070) 2,104,400.00	(8,292.5) 1,480,414.00	(2,795.6) 637,070.09	(11,088.10) 2,117,484.09	99.1
지방도로공사 유료도로사업 토지개발공사 항만정비사업 암해공업용지조성사업 내륙공업용지조성사업 유통업무단지조성사업 사무소・점포 등 용지조성사업		1,841.31	18,409.32	20,250.63	0.9
소 계	20,000.00	1,841.31	18,409.32	20,250.63	0.9
총 계	(17,070) 2,124,400.00	(8,292.5) 1,482,255.31	(2,795.6) 655,479.41	(11,088.10) 2,137,734.72	100.0

<표 4> 단체별 대부상황

구 분	1999년도 대부액	
	금액(백만엔)	구성비(%)
도도부현	398,808	18.7
정령도시	348,845.13	16.3
시	907,353.26	42.4
정촌	399,002.90	18.7
기업단・조합등	63,474.80	3.0
공사	20,250.63	0.9
계	2,137,734.72	100.0

한편, 단체별 대부상황은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가 가장 많은 58.8%를 차지하고 있다.

다. 원리금회수 및 대부금잔고

대부금 및 이자회수는 원칙적으로 반년부원리균등상환의 방법에 의해 매년도 9월20일에 행하고 있다. 1999년도의 회수상황은 <표 5>와 같이 장기대부에 대해서는 정기상환으로서 원금 208,380건에 9,209억엔, 이자 344,004건에 9,955억엔을 수납한 것 외에 조상상환으로서 원금 1,893건에 1,013억엔 및 이에 수반한 이자 1,007건에 16억엔이 수납되었다.

1999년말 공사대부를 포함한 장기대부잔고는 172,650건에 22조 5,342억엔이고 사업별 잔고는 <표 6>과 같다.

이외 수탁대부로서 공유림조림자금에 대해서는 정기상환으로서 원금 14,629건에 103억, 이자 35,896건에 148억엔을 수납했다. 또한 공유목야자금에 대해서는 정기상환으로서 원금 2,107건에 18억엔, 이자 2,958건에 16억엔을 수납했다. 연도말 수탁자금대부잔고는 공유림조림자금 34,703건에 4,024억엔 공유목야자금은 2,792건에 367억엔이다.

<표 5> 대부금회수상황

구 분	원 금		이 식	
	건수(건)	금액(백만엔)	건수(건)	금액(백만엔)
장기대부정기상환				
일반대부	207,385	911,650	342,566	986,238
공사대부	995	9,253	1,438	9,332
계	208,380	920,903	344,004	995,570
장가대부조상상환				
일반대부	1,891	100,215	1,007	1,614
공사대부	2	1,148	-	-
계	1,893	101,363	1,007	1,614
기채전대상환	-	-	14	1
단기대부상환	-	-	-	-

<표 6> 사업별 장기대부잔고

사업명	금액(백만엔)	구성비(%)	사업명	금액(백만엔)	구성비(%)
수도사업	5,016,304	22.3	하수도사업	8,326,125	37.0
공업용수도사업	431,654	1.9	공영주택사업	940,890	4.2
교통사업	1,346,052	6.0	산업폐기물처리사업	221	0.0
전기사업	134,532	0.6	임시지방도정비사업	4,895,701	21.7
가스사업	96,720	0.4	임시하천등정비사업	402,619	1.8
항만정비사업	97,157	0.4	임시고등학교정비사업	134,747	0.6
병원사업	9,731	0.0	일반대부 계	22,318,118	99.0
시장사업	134,744	0.6			
관광시설사업	33,351	0.2	도로공사	215,570	1.0
유료도로사업	3,190	0.0	토지개발공사	539	0.0
주차장정비사업	165,907	0.7	공사대부 계	216,109	1.0
지역개발사업	148,473	0.7			
임해공업용지조성사업	102,725	0.5			
내륙공업용지조성사업	34,757	0.2			
교통업무단지조성사업	654	0.0	합 계	22,534,228	100.0
토지구획정리사업	6,056	0.0			
시가지재개발사업	4,072	0.0			
주택용지조성사업	210	0.0			

라. 자금조달 및 공영경기납부금 상황

1999년도 대부액 2조 1,377억엔의 원자는 공영기업채권의 발행에 따른 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1999년도 공영기업채권의 발행 총액은 2조 4,741억엔(1998년도 발행총액은 2조 6,566억엔)이고 그 내역은 국내공모채 1조 7,827억엔, 연고채 5,812억엔 및 외화채 1,101억엔이다.

공모채 소화실적은 신디게이트단인수 5,015억엔(28%), 신디게이트단이외의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등이 1조 2,811억엔(72%)이다. 덧붙여 1999년도 공고가 발행한 국내공모채(정부보증채) 1조 7,827억엔이고 이는 1999년도 국내공모채(정부보증채 10년채) 발행총액 2조 2,245억엔의 80.1%를 차지하고 있어 1999년도도 정부보증채(10년채)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연고채는 1989년도부터 지방공무원공

제조합연합회로 전액 인수되어 1999년도의 인수실적은 5,812억엔이다. 외화채는 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의 일환으로 1983년도부터 발행하고 있는데, 1999녀도는 유로달러채, 유로스타링본드채 및 유로달러채(환지블)를 각각 5억달러(약 606억엔), 1.5억본드(약 283억엔), 2억달러(211억엔)을 발행했다.

공영기업채의 1999년도말 발행잔고는 21조 6,731억엔이다. 1999년도 공영기업채의 발행조건은 외화채에 대해 유로달러채는 년이율 6%, 발행가액 99.967%, 기간 10년의 발행조건으로 하고 유로스탈링본드채는 연이률 5.75%, 발행가액 99.337%, 기간 20년의 발행조건으로 유로달러채(판지블)은 연이률 6%, 발행가액 90.098%, 기간 9년3개월의 발행조건으로 각각 발행했다.

한편 공영경기납부금 상황을 보면, 1999년도의 납부단체수는 243단체로 공영경기의 개최권을 가진 단체(440단체)의 55%이고 그 납부금액은 263억 7,927만엔으로 전년도의 340억3.035만엔에 비해 76억엔이 감소되고 있다.

마. 공고운영에 대한 수익 및 지출

1999년도 이익은 대부금이자 9,965억 1,974만엔, 수탁수수료 2억 8,346만엔, 일반회계로부터의 보급금 20억엔, 여유금의 운용수익 16억 820만엔, 잡수입 10억 등 합계 1조 14억엔 2,922만엔이다.

이에 대해 손실은 채권이자 8,113억엔, 채권발행경비 56억엔, 사무비 16억엔, 채권차환손실인당금전입 1,585만엔, 고정자산의 당해연도 감가상각비 4,977만엔 합계 9,773억 2,567만엔이고 이익과 손실의 차액 241억엔을 채권발행자금 및 채권발행비의 상각비 241억엔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은 생기지 않고 있다.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수입예산액 1조 5억엔에 대해 수입결제액은 1조 20억엔이고 차액 15억엔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평균대부이율이 상승한 것에 의해 대부금이자수입이 많았던 것이 주된 이유이다. 지출에 대해서는 지출예산액 8,652억엔에 대해 지출결제액은 8,374억엔이고 278억엔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맺는 말

이상과 같이 일본의 경우는 공영기업금융공고라는 지방채인수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서 자치단체의 개

발 및 재정수요에 대해 안정적이고 장기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에 비해 지방재정이 보다 열악한 상황에 있으며 재정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대응하여 양질의 장기저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지방채 인수 전담기구의 설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채전담 인수기구의 설립에 있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같은 기존의 지방재정관련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케하는 것이 경비절약 차원 및 업무의 효율적 처리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하여 도입초기에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채권발행에 있어서의 정부보증, 기타 자치단체의 참여유도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시사용어 해설

• 매터도 (Matador)

근거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편을 중상모략하거나 그 내부를 교란하기 위해 하는 '흑색선전(黑色宣傳)' 의미로 정치권에서 널리 쓰임. 마지막에 소의 정수리를 찔러 죽이는 투우사(Bullfighter)를 뜻하는 스페인어 'Matador(마타도르)'에서 유래. 투우를 시작할 때 긴 창으로 소를 찔러 화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기마 투우사는 'Picador'라 부름. 독일에서 성행하는 스카트(Skat: 3명이 32장의 패를 가지고 노는 카드놀이) 따위에서의 으뜸패나 지대공(地對空)미사일 이름을 칭하기도 함.

- 편 집 실 -